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아 동 ·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숙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중

1. 의결주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·공개정보로 확대하고,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337호, '23. 4. 11. 공포, 10. 12. 시행)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·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·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0. ~ 6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주민자치센터”를 “주민센터”로 한다.

제22조의2의 제목 “(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)”을 “(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5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52조의2제1항”으로, “고지정보”를 “고지정보 및 공개정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지정보”를 “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52조의2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,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“고지정보”를 각각 “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고지정보”를 “고지정보 및 공개정보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”을 “법 제56조제4항, 제5항 및 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동·청소년”을 “교육감 또는 교육장, 아동·청소년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39조제6항 중 “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”을 “법 제56조제4항, 제5항 및 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2조(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)	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·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.	제22조(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)	-----	-----
제22조의2(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·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	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	제22조의2(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) ① 법 제52조의2제1항-----	--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-----	-----
③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		② -----	---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--	-----
		③ 법 제52조의2제2항-----	----- 고지정보	-----
			또는 공개정보-----	-----

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, 그 변경된 정보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(이하 “등록정보원부”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,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,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

-----.

④ -----

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-----
-----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-----

-----.

⑦ -----
-----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-----

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성범죄의 경력 조회)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,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33조(권한의 위임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

-----.

제25조(성범죄의 경력 조회) ① 법 제56조제4항, 제5항 및 제8항---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, 아동·청소년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권한의 위임) <삭 제>

의 권한

가.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

점검·확인

나.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

자료의 제출 요구

2. 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

의 권한

가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

해임 요구

나.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

폐쇄 요구

다.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

폐쇄 요구 또는 등록·허

가 등의 취소 요구

라.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

따른 이의신청의 접수·처

리 및 통지

3.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

부과·징수

② (생략)

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① ~ ⑤ (생략)

⑥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
설치 또는 설립 인가·신고를
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① ~ ⑤ (현행과 같
음)

⑥ -----

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<u>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</u>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<u>법 제56조제4항, 제5항 및 제8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405